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2인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등〉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01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2인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2. 28.

다. 회 부 일 : 2024. 3.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 2인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개정안은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등).

현행	문정복의원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 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 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 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후단 신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 ----- ----- ----- ----- . <단서 삭제>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 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④ -----제2항의----- ----- -----

현행	문정복의원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 ----- ----- ----- ----- -----.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을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 ----- -----.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1)에서 학교급식 대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2)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3)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1)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2)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19조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의 교원을 두도록 하고,⁴⁾ 같은 법 제21조에서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기준⁵⁾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영양교사의 배치율을 살펴보면,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학년도 시·도별 영양교사의 배치율은 평균

3)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65.4% 수준으로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10,758개교에 영양교사 7,041명, 영양사(정규직, 공무원, 기타) 4,185명이 배치되어 총 11,226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⁶⁾

<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영양교사 배치현황 >

(단위: 개교, 명, %)

학년도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	영양교사 수					배치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9	10,546	3,972	774	861	126	5,733	54.4
2020	10,629	4,100	841	949	132	6,022	56.7
2021	10,712	4,208	902	1,024	143	6,277	58.6
2022	10,729	4,445	961	1,226	155	6,787	63.3
2023	10,758	4,531	1,050	1,305	155	7,041	65.4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매학년도 말 기준, 국립·공립·사립)

< 2023학년도 시·도별 영양(교)사 배치현황 >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	1,239	584	427	520	306	288	244	99	2,289	591	419	626	560	735	729	914	188	10,758
영양교사	728	325	253	342	187	179	137	98	1,414	368	307	480	414	496	583	581	149	7,041
영양사	625	299	203	218	126	145	114	7	906	206	126	211	211	224	178	348	38	4,185
영양교사 비율	58.8	55.7	59.3	65.8	61.1	62.2	56.1	99.0	61.8	62.3	73.3	76.7	73.9	67.5	80.0	63.6	79.3	65.4

주: 급식시설을 갖춘 10,758개교에 7,041명의 영양교사 외에 4,185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었음.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제출자료, 2024.2.29.기준, 국립·공립·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한편,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급식 횟수 증가에 따른 영양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3식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단계적

6) 「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7962호, 2006.7.19.> 제3조에 따라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 가능함.

※ 부칙<법률 제7962호, 2006.7.19.> 제3조(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으로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⁷⁾하고 있는바, 2024년 4월 기준 2~3식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총 719개교 중 327개교는 영양(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음.

< 2~3식 제공 공립학교의 인력 배치현황(2024.4월기준) >

2~3식 학교수	인력 배치현황)	
	1인 배치교 (영양(교)사)	2인 배치교 (영양(교)사+영양(교)사)
719교	392교	327교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제출자료, 2024.4.1.기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⁸⁾ 학생 수가 많거나 1일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양교사의 과중한

7) 영양교사 정원 배정 시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가 개정(2019.3.1.시행)되었음.

8)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67억 9,600만원~1,455억 7,000만원(연평균 73억 5,900만원~291억 1,400만원)으로 추계⁹⁾하였으므로, 소요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연평균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안 제7조제1항)	시나리오1	7,402	6,918	7,188	7,468	7,819	36,796	7,359
	시나리오2	29,285	27,369	28,437	29,545	30,934	145,570	29,114

주: 1) 각 시나리오별로 영양교사가 추가 배치되는 학교의 재학생 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1: (초) 1,5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시나리오2: (초) 1,0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2)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배치될 영양교사의 인원과 호봉 등 인건비 단가, 영양교사를 배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합보조금의 규모 등에 따라 추계액은 변동될 수 있음.

-기준 재학생 수를 초과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는 전원 2급 8호봉으로 신규임용,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

-국·공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사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 비용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용만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영양교사의 추가

9)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학교 통폐합이나 재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그 추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3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 배치 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배치 대상 학교가 현재 1명 이상의 영양교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 추계에서는 대상 학교마다 1명의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발의) 비용추계서 pp.2~3

배치를 통한 급식 관리 업무 경감 및 급식의 질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영양교사 2인 배치 문제는 국가공무원 정원증원, 교원 수급사정, 예산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가공무원 정원을 담당하는 행안부에서는 “개별 법률에 교원 확보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정원 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전체 교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최근 영양교사의 정원증원 규모가 신설학교·영양사 퇴직 학교도 충족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선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적정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외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및 안정적인 급식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는 학교에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9개 교육청¹⁰⁾은 36학급 이상, 2식 이상의 급식 제공, 통합학교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어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및 안정적인 교육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다만,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는 학교에 36학급 이상,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통합학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제7조제1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현행 「학교보건법」은 제15조¹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¹²⁾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36학급 이상의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10) 광주·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11)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1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문 의 처
02)6788-5192